

윤리규정



윤리행동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세미티에스의 기업투명성 확보와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무 한경쟁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 단의 기준으로서 윤리행동내용을 명시적으로 설정, 실천하기 위함이다.

제2조(대상범위) 이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은 (주)세미티에스의 재직중인 모든 임직원이다.

제3조(법규 준수 및 공정 거래) (주)세미티에스 전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준하여, 행동한다.

1. 법규의 준수

가. 국내 및 해외(경영권 혹은 지분이 있는 해외 타법인 포함)에서의 모든 사업 및 경영활동은 해당 국가의 실정법과 회사의 사규에 준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사회적 기본 가치나 양심, (주)세미티에스의 핵심가치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공정한 거래 및 경쟁

가. 거래선과의 관계: 공급자 선정에 있어, 일반적인 제반 조건을 구비한 모든 선정 희망업체에 평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와 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며, 특정인의 재화나 용역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나. 경쟁자와의 관계: 시장경제체제하의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서나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경쟁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기술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제4조(고객에 대한 책임) (주)세미티에스 전 임직원은 고객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1. 고객의 존중과 가치 제공

가. 고객의 의견과 불만에 최우선적으로 수렴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의 생각은 기업 활동의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고객 만족이 곧 회사의 만족, 더 나아가 회사의 발전과 성장이라는 인식하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끊임없이 발굴, 창조하여 최고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다.

2. 고객과의 약속 이행

가. 고객과 약속한 물품 인도일 혹은 납기일 준수를 항상 유념하고 영업 및 생산활동을 진행한다.

- 나. 해당 국가의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과세하는 모든 세금에 대한 납부일을 준수한다.
- 다. 외상매입금의 정해진 기일 내 지급을 준수한다.

제5조(임직원의 기본 윤리) (주)세미티에스 전 임직원은 재직기간 중 다음 각호와 같이 업무진행 시 윤리적인 행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직, 성실한 업무 처리와 품위 유지

- 가.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핵심가치, 사업목표 등을 항상 공감하고, 회사 방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히 수행한다.
- 나. 임직원은 상호간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며, 상급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나 압력을 가해서는 안되며,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받은 경우, 하급자는 그러한 부당함을 상급자에게 소명하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거나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할 경우,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이를 알린다.
- 다. 임직원은 근무공간 내부 또는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이나,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 라. 임직원은 본인의 수행업무가 자신 또는 주변 지인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상급자 또는 주관부서에 상담 후 진행한다. (혈연, 학연, 지연 등에 따른 특혜 시비 배제)
- 마. 임직원은 회사의 주인 및 대표라는 자세로 회사 내/외부를 막론하고, 단정한 복장, 예의 바른 행동, 품위 있는 언어로써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 근무지의 지정된 흡연장소 이외에서의 흡연행위는 일체 할 수 없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득 취득 금지

- 가. 임직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협력업체, 공급업체 등)로부터 일체의 금전, 향응, 접대, 선물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사적 이득을 받거나, 암시 또는 요구해서는 안된다.
- 나. 임직원은 회사 행사 시 거래처에 후원 또는 협찬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되며, 행사 내용을 사전 고지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 다. 임직원은 개인적 경조사에 대해, 회사 업무 관련 거래처에 알리지 않는다.
- 라.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전대차 및 청탁행위 등을 해서는 안되며,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 임직원 겸임, 가족/지인 등의 부당한 취업 청탁, 부당거래 알선 및 청탁, 금전대차, 담보제공, 거래처의 주식 취득, 공동투자 등이 해당한다.

3. 영리목적의 부업 또는 이중 취업의 금지

- 가.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부업, 이중 취업 또는 회사를 설립, 운영해서는 안된다.
- 나. 임직원은 거래처에 대해 본인, 배우자 또는 지인 명의로 투자해서는 안된다.
- 다. 임직원은 본인 또는 지인의 다단계판매, 보험 등을 임직원 및 거래업체에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회사 예산, 자산의 사용 및 보호

- 가. 임직원은 예산을 목표과 기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타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된다.
- 나.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회사 경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다. 임직원은 회사의 유형자산(각종기기, 시스템, 설비, 비품 등)을 회사 업무 수행 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라.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경영정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외부로 일체 유출 할 수 없다.
- 마. 임직원이 재직기간 중 개발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자격/이익은 회사로 귀속되며,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PC, 이동식 저장매체, 서류 등을 포함하는 모든 회사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

5.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가. 임직원은 인터넷이나 PC통신,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나. 회사 내에서의 불법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회사 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구입하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7.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

- 가. 임직원은 공식적으로 발표, 승인된 회사 정보 이외에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발표, 유출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 나. 임직원은 고객 및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되며, 합법적인 업무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

7.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

- 가. 임직원은 회사 내 외부를 막론하고, 본인의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타 임직원에게 성적 언동, 구체적 행위 등으로 성적 쿨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응의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한다.
- 나. 임직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이를 실천한다.

8. 회사 관련 정보의 왜곡, 날조 및 무단훼손 금지

- 가. 임직원은 회사 관련 정보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된다.
- 나. 임직원은 업무수행 상 본인의 실수나 비위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하기 위해 업무 관련 정보를 왜곡, 날조해서는 안되며, 관련된 자료 일체를 무단훼손, 조작해서 도 안된다.
- 다. 임직원은 본인의 상급자, 하급자, 동료 직원의 개인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 과장, 혐담해서는 안된다.

제6조(사회적 책임) 쭈세미티에스 다음 각호와 같은 구체적 행동규정을 실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일조한다.

1. 주주 이익의 보호

- 가. 회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한 회계기록체계 유지 등을 통하여, 건전

한 이익 실현을 경주한다.

나. 회사는 주주의 자산을 보호, 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유지, 보호한다.

2. 사회적 공헌 기여

가. 회사는 사업장 소재 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조세에 있어 성실한 신고 납부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나. 회사는 다양한 사회적 기부활동, 복지사업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신망받는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

3. 환경 보호

가. 회사는 경영활동 상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한 실천을 구체화한다.

나. 무분별한 자원남용을 지양하는 경영 및 생산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제7조(윤리행동규정 준수의무) (주)세미티에스 전 임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윤리행동규정 준수 의무를 다한다.

1. (주)세미티에스 모든 임직원은 윤리행동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원과 직책보유자들은 해당 소속 직원의 윤리행동규정 준수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주)세미티에스 윤리행동규정을 전사적으로 감독, 교육, 처리하는 주관부서는 인사팀으로 한다.
3. 임직원의 윤리행동규정 위반 행위 발생 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절차와 객관성에 근거하여, 징계조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한 윤리행동규정 위반행위 재발에 최선을 다한다.
4. 임직원이 윤리행동규정 위반 행위를 인지하거나, 강요받을 경우, 자체 없이 인사팀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5. 윤리행동규정 위반 행위 제보의 유형

- 가. 임직원의 외부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선물 등의 수뢰 또는 요구 사실
- 나.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
- 다. 거래업체의 지분 참여 및 취득, 금전대차, 담보제공, 취업청탁, 부당행위 알선
- 라. 임직원의 이중취업 사례
- 마.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풍기문란 사례
- 바. 기타 윤리행동 규정에 위배되는 모든 사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